

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심 사 보 고 서

2026. 2.

정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. 3. 28.

김상훈의원 등 15인

나. 회부일자 : 2025. 3. 31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

○ 제428회 국회(임시회)

－ 제2차 정무위원회(2025. 8. 26.)

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대체토론, 소위원회부

○ 제430회 국회(임시회)

－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(2025. 12. 16.)

상정, 축조심사, 의결(대안반영폐기)

－ 제1차 정무위원회(2025. 12. 17.)

상정, 소위심사보고, 찬반토론, 의결(대안반영폐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 : 김상훈의원)

현행법에서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의 과정을 포함한 경영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자에게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해당 인증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기 위한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을 두고 있음.

그런데 인증의 의미는 제품·서비스 등이 국가·국제표준 등 일정한 기술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·증명하는 것으로,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라는 명칭은 그 의미·성격에 차이가 있어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. 2024년 2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인증규제 개선방안에서도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 혼선 유발 유사인증 91개에 포함시킨 바 있음.

한편, 현행법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신청하는 사업자에게 그 인증 심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고 실제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(한국소비자원)에서 해당 비용을 인증제도 운영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나, 국회정무위원회 결산심사에서는 사업자에게 납부받은 인증 심사 비용을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 심사 업무에 사용하는 것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음.

이에 소비자중심경영인증 명칭을 그 성격에 부합하는 소비자중심 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바꾸고, 지정 심사에 대하여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의 심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(안 제20조의2 등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이 선 주)

1. ‘소비자중심경영인증’을 ‘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’으로 명칭 변경

□ 현행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물품의 제조·수입·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의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고, 해당 인증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기 위한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소비자중심경영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.

-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을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지정함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평가신청을 한국소비자원에 하고, 이 평가에서 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할 경우 공정위가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,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, 2024년 12월 기준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

받은 기업은 236개임.

□ 그러나 인증의 의미는 제품·서비스 등이 국가·국제표준 등 일정한 기술수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·증명하는 것으로,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라는 명칭은 그 의미·성격에 차이가 있어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- 2024년 2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인증규제 개선방안에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 혼선 유발 유사인증 91개에 포함시키고, 이러한 소비자 혼선을 유발하는 유사인증은 인증에서 제외하고 소관 부처의 타 행정행위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.

□ 이에 따라 개정안은 ‘소비자중심경영인증’ 명칭을 ‘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’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소비자 혼선 유발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.

□ 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혼선을 유발하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며, 수용한다는 의견임.

2. 사업자 부담 비용을 지정심사 비용으로 직접 사용 근거 마련

□ 현행법 제20조의2제6항에 따르면,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신청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인증의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음.

- 현재 한국소비자원은 「소비자기본법」 제20조의3 등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수탁받은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운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,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은 모두 한국소비자원으로 귀속되고 있음.

□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청 사업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인증 비용을 한국소비자원의 인증제도 운영 비용에 충당하도록 하는 것이 「국가재정법」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총계주의 및 「국고금 관리법」 제7조에 따른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원칙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.

□ 이에 개정안은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신청한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의 심사 비용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.

□ 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직접 경비 사

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며 수용한다는 의견임.

4. 대체토론 요지

없 음

5. 소위원회 심사내용

(소위원장 : 강민국위원)

- “위원회 대안” 마련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(대안반영폐기).

6. 찬반토론 요지

없 음

7. 심사결과

대안반영폐기